

안 내 문

받는 분 :	회원사 대표이사	보내는사람 :	한국벤처캐피탈협회
참 조 :	기획관리담당 부서장	날 짜 :	2023. 10. 18
대표번호 :	02-3017-7045	분 량 :	1매
제 목 :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 시행 안내		
■ 법령/제도 안내 □ 출자공고문안내 □ 경조사안내 □ 회원사 등 변경사항 안내 □ 의견수렴 □ 기타			

안녕하십니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.

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’의 일부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< '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' 정의 및 결성요건 신설 >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정의 신설(제2조의12)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요건(제63조의2)
 - (운용주체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'자본시장법'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다만, '자본시장법'에 따른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자는 공동업무집행조합원에 한함
 - (등록요건) 결성금액 최소 1,000억원 이상으로 분할 출자 시 최초 출자금 200억원 이상, 이외에 요건은 벤처투자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의 특례(제63조의2)
 - (투자의무) 결성금액의 60%를 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에 사용. 다만, 창투사의 총자산 및 벤처투자조합 전체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 제외
 - (행위제한의 특례)
 - ① 결성금액의 40% 내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,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,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허용
 - ② 결성금액의 40% 내에서 상장 법인 투자 허용
 - ③ 결성금액 30% 내에서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에 10% 미만으로 출자 가능

※ 개정법 확인 :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

※ 문 의 :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(이메일: eunj5307@kvca.or.kr / Tel: 02-3017-7045)